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71,891,291	62,156,739
일반회계	1,798,203,421	53,946,103
특별회계	273,687,870	8,210,636
공기업특별회계	199,435,180	5,983,05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6,787,290	2,903,61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2,647,890	3,079,437
기타특별회계	74,252,690	2,227,581
교통사업 특별회계	18,077,235	542,31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40,309	49,20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194,784	95,844
대지보상 특별회계	1,500,000	45,000
기반시설 특별회계	103	3
수질개선 특별회계	22,936,139	688,08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837,260	205,118
균형발전특별회계	20,066,860	602,0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사"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143,51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